#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656 2021년 8월 31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조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 시점만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에 법상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형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시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 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2021. 5. 6. ~ 5. 26.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에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지난 경우"도 포함시켜 형사절차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도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현행 조례¹)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자치구와 수사기관에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 조항 단서 규정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를 자 치구에 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한²)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처분이 완료

<sup>1) 「</sup>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u> 이를 <u>자치구</u>나 <u>수사기관에 신고</u> 또는 <u>고발한 자</u>에게 <u>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u>포상금</u>은 위반행위자의 <u>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u>에 지급하거나, <u>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u>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u>

<sup>1.</sup>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sup>3.</sup>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sup>4.</sup>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sup>5.</sup>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sup>6.</sup>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sup>2)</sup> 관련법 위반사항 중 자치구에 신고 대상

<sup>-「</sup>자동차관리법」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된 경우만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에는 별도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형사절차 적용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등록하지 아 니하고 자동차 운행,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시 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절차

위 반 행위(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신고/ 고발기관	처리절차	자동차관리법 처분기준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법 제53조)	수사기관	형사절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법 제53조)	자치구	행정처분 절차	등록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형사절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 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법 제24조의2제1항(자동차사용자)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수사기관	형사절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sup>3)</sup> 관련법 위반사항 중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대상

<sup>-</sup>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sup>-</sup>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sup>-</sup>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sup>-</sup>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sup>-</sup>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중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포상금 지급시기로 추가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지급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처분 불복기간"을 "행정처분절 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	
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	
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	
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u>행</u>	<u>ই</u> ট
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	<u> 불복기간</u>
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	
에 지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이한진(02-2133-2344)